

# '23년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·운영 지원사업 공고

방위력 개선사업에 참여하는 중소·중견기업의 기술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「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·운영 지원사업」의 참여기업을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## < 방위산업기술보호체계 구축·운영 지원사업 주요현황 >

구분	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	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
지원내용	인원통제, 시설보호체계, 정보보호체계 등 기술적·물리적 보안솔루션 구축비용 지원	보안관제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통합보안장비(UTM) 임차료 지원
지원규모	총 사업비의 50% ~ 80% (최대 1억 원까지 지원)	총 12개월분 (최대 250만원까지 지원)
지원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<b>중소기업</b> 또는 「중견기업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<b>중견기업</b> 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른 <b>방산업체</b> 및 방산업체의 <b>협력업체</b>*로서 현재 방위력개선사업에 참여중인 기업</li> <li>* 최근 3년간 방위력개선사업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기업</li> <li>** 임차료 지원사업의 경우, 통합보안장비를 임차 중이거나 신청할 기업</li> </ul> </li> <li>※ 지원 제외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휴·폐업중인 기업, 기업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의 금융질서 문란자*로 관리중인 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금융질서문란자 :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, 대의변제·대지급 부도 관련인, 금융질서 문란, 화의·법정관리·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</li> </ul> </li> <li>② 부채비율이 1,000% 이상이거나 최근 결산년도 기준 자본잠식인 경우</li> <li>③ 본 사업과 동일한 목적으로 정부지원금을 받은 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의 동일 사업 수혜를 받은 기업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/ul>	
신청기간	3. 27. ~ 4. 21.	
신청방법	제출서류 작성 후 E-mail 송부 (security2018@korea.kr)	
문의처	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 기술보호과 ☎ 02-2079-6976	

2023년 3월 27일  
방 위 사 업 청 장

## □ 사업개요

중소·중견기업의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여 기술 보호 수준 향상

## □ 지원현황

- 지원내용 : 보안인프라 정밀진단 및 설계(현장컨설팅)를 통해 기업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시스템 추천 및 구축비용 일부를 지원
  - 서버 및 PC 보안, 문서보안 등 기술적 보안 솔루션
    - 침입탐지·방지, 구간보안, 전송자료보안, 보안관리 제품군 등
  - 망 분리, 인원통제 및 시설보호 등 물리적 보안 솔루션
    - 네트워크 장비, 출입통제 및 모니터링 장비
- \* [별지 1]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가능 세부제품유형
- 사업예산 : 7.12억 원
- 지원규모 : 총 사업비(부가세 별도)의 50% ~ 80%, 기업별 최대 1억 원
  - \* 기업규모 등에 따라 지원비율에서 차등지원
- 사업기간 : 협약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 이내

## □ 신청기간 및 방법

- 신청기간 : 2023. 3. 27. (월) ~ 4. 21. (금)
- 신청방법 : 제출서류 작성 후 E-mail 송부 (security2018@korea.kr)
  - 제출서류\* : ①사업 참여 신청서, ②사업계획서\*\*, ③정부지원금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, ④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, ⑤지원자격 증빙서류

\* [별지 2]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 신청 서류 참조

\*\* 사업계획서 작성 시, 네트워크 구성도·IP 주소 등 보안사항 또는 업체 기술수준 파악이 가능한 민감한 정보는 기입 금지, 일반현황 및 공개가능 자료 수준으로 작성

## □ 사업 절차 안내



### ① 지원받길 희망하는 기업은 제출서류\* 작성 후 E-mail 송부(security2018@korea.kr)

\* 사업 참여 신청서, 사업계획서, 정부지원금 중복지원여부 확인서,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및 지원자격 증빙서류\*\* 제출

\*\* 공통 : 중소기업 확인서 혹은 중견기업 확인서 제출

방산업체의 경우 : 방산업체 지정서

방위산업기술 보유업체의 경우 : 방위산업기술 판정서(방위사업청 발급본만 인정)

방산 협력업체의 경우 : 방산업체와 협력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(계약서 등)

### ② 신청기업 중 적격기업\*에 대해 민간전문가의 현장컨설팅\*\*을(2~3일) 실시하여 기업환경에 적합한 보안솔루션 추천 및 제안요청서 작성 지원

\* 신청기업 제출서류에 대해 중소·중견기업 해당여부와 방위산업 관련성 및 지원 제외대상여부 등을 검토하여 선정

\*\* 현장컨설팅 시 신청기업 제출서류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적격 기업 자격 검증을 실시하며, 기업의 현 보안 실태를 점검 후 맞춤형 기술유출방지시스템을 제안하여 제안요청서 작성 후 청에 제출

### ③ 제안요청서를 바탕으로 신청기업은 공급기업들로부터 제안서(가격제안서 포함) 및 견적서를 접수 후 시스템 구축을 맡길 1개의 공급기업 선택\*

• 신청기업은 공급기업의 제안서(가격제안서 포함) 및 비교견적서 2건 이상을 청에 제출하며, 청은 견적서를 통해 가격검증 및 필요시 시스템 구축비용 조정 실시

\* 공급기업 선택절차 : 중소기업 기술보호울타리 (<https://www.ultari.go.kr>) 접속 → 기술 유출 방지시스템 구축지원 → 공급기업 등록현황 → 공급기업 선택(현장컨설팅 후 작성한 제안요청서를 바탕으로 공급기업과 협의) → 선택 후 신청기업의 제안요청서, 공급기업의 제안서를 청으로 제출

※ 공급기업현황은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이며, 해당 홈페이지에 없는 공급 기업도 선택 가능하며 평가와 무관합니다.

④ 제출서류를 검토·평가하여 **참여기업 선정**

- 검토·평가서류 : 신청기업의 사업계획서·제안요청서와 공급기업의 제안서
- 신청기업과 공급기업을 한 그룹으로 평가하며 신청기업의 의지, 공급기업의 역량, 제안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고 심사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 산출
- 신청기업, 공급기업의 평가점수 각각 100점(총점 200점)에 우대가점 15점을 합하여 선정평가점수를 산정하고 순위에 따라 예산 고려 후 참여기업 선정

평가대상	평가항목	배점	
신청기업	보유기술 중요성, 기술보호 시급성 등의 기술보호 필요성	60	
	기술보호 추진의지 및 시스템 구축 후 기대효과	40	
공급기업	구축목표 및 전략 등 지원전략	30	
	목표달성 가능성 등 지원역량	30	
	일정관리 적정성 및 비용, 사후관리 적정성 등의 사업관리	40	
계		200	
우대사항		가점	비고
- 기술유출 피해기업 * 검찰 및 경찰청 등 피해사실 입증 공문		10	* 신청기업에 해당 * 최대 2개, 15점까지 인정 (증빙자료를 첨부해야 가점인정 가능)
- 경영혁신형 중소기업(MAIN-BIZ) - 기술혁신형 중소기업(INNO-BIZ) - 벤처인증기업 - 글로벌 강소기업 - 「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여성기업 - 「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」에 의한 장애인기업 - 기술사관 육성사업단 협약기업 - 가족친화인증기업		각 5점	

※ 신청기업과 공급기업 중 한 기관이라도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⑤ **협약체결 및 사업착수**

- 참여기업과 공급기업을 대상으로 선정결과 통보(협약서 발송)
  - \* 참여기업은 협약서 3부에 직인날인 후 1개월 이내에 청으로 제출
- 공급기업은 착수보고서를 협약일로부터 2주 이내에 청과 참여기업에 제출

⑥ **시스템 구축 실시**

- 공급기업은 시스템 구축 경과에 따라 사업수행일지를 참여기업에 제출
- 참여기업은 공급기업의 사업수행일지를 확인하고 청에 진도보고서 제출

⑦ 시스템 구축 완료 및 수행상황 점검\* 실시

- 참여기업은 협약종료일 40일전에 최종보고서를 청에 제출
- 점검기관은 참여기업의 최종보고서를 검토하고 현장 방문하여 수행상황 점검 실시

\* 사업계획서 및 제안서의 시스템 구축 계획 대비 목표달성 여부를 평가하며, 그 외 인력 투입 현황 및 사업비 지출 내역을 검사

⑧ 참여기업의 최종보고서와 수행상황 점검 결과보고서로 최종평가\*

\* 심의 결과 ‘성공’ 판정 시, 잔금 지급 및 사업 종결하며, ‘실패’ 판정 시 1개월간 보완기간 부여 후 점검 재실시

⑨ 사업종결 후 참여기업은 정산 및 실적보고서를 작성하고 보조금 관리시스템 (e-나라도움\*)에 실적 등록 및 중요재산에 대한 정보공시 실시

- 참여기업은 본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시스템의 현황을 제출하고, 추후 변동사항 (시스템 이전 등)발생 시 청으로 변동사항 보고

\* 정산실적 등록 및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 청에서 자료 요청 및 보조금 관리시스템 등록 요청 시 참여기업은 청에서 정한 기한 내로 자료제출 및 등록 완료

※ 더 자세한 내용은 [별지 3] ‘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운영절차’ 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
## □ 사업개요

중소·중견기업에 보안관제에 사용되는 통합보안장비\* 임차료를 지원

\* 통합보안장비 (UTM : Unified Threat Management) : 방화벽, 침입탐지시스템, 침입방지시스템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합한 보안솔루션

## □ 지원현황

○ 지원내용 : 보안관제서비스를 위한 통합보안장비의 임차료 지원

\* 보안관제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기능(IPS 등)을 보유한 장비를 '구매'가 아닌 '임차'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함

○ 사업예산 : 0.8억 원

○ 지원규모 : 임차료(부가세 별도) 12개월분, 기업별 최대 250만원 한도

○ 사업기간 : 협약을 체결한 월부터 12개월

\* 계속지원 기업은 기존 사업기간의 다음 월부터 지원, 기존 협약내용의 지원규모 유지 (장비교체 등에 따라 지원규모가 변경될 시 신규지원 필요)

\* 신규지원 기업 중 UTM을 임차하고 있지 않은 기업이 협약체결 이후 장비를 임차할 경우, 협약체결부터 임차계약 체결시점까지의 기간은 지원하지 않음

※ 통합보안장비 임차 시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보호지원사업인 「기술지킴서비스」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.(24시간 무상지원)

## □ 신청기간 및 방법

○ 신청기간 : 2023. 3. 27. (월) ~ 4. 21. (금)

○ 신청방법 : 제출서류 작성 후 E-mail 송부 (security2018@korea.kr)

• 제출서류 : ①지원사업 참여 신청서, ②사업자등록증, ③통합보안장비 임차계약서(임차계약 예정인 경우 견적서), ④정부지원금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, ⑤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, ⑥지원자격 증빙서류

\* [별지 4]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 신청 서류 참조

## □ 사업 절차 안내



### ① 지원받길 희망하는 기업은 제출서류\* 작성 후 E-mail 송부(security2018@korea.kr)

\* 사업 참여 신청서, 사업자등록증, 통합보안장비 임차계약서(계약 예정인 경우 견적서), 정부지원금 중복지원여부 확인서,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및 지원자격 증빙서류\*\* 제출

\*\* 공통 : 중소기업 확인서 혹은 중견기업 확인서 제출

방산업체의 경우 : 방산업체 지정서

방위산업기술 보유업체의 경우 : 방위산업기술 판정서(방위사업청 발급본만 인정)

방산 협력업체의 경우 : 방산업체와 협력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(계약서 등)

### ② 신청기업의 제출서류 검토 후 선정기준\*의 가점 취합 후 순위를 부여하고 예산을 고려하여 참여기업 선정

\* 가점의 경우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부여하며 제출서류 사실 확인 등을 위해 청에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

구분	우대사항 및 가점내용
중소기업	○ 방산 관련 중소기업 우대
방위산업기술 보유	○ 방위산업기술 보유 여부에 따라 가점 부여
매출액 대비 방산매출액 비율	○ 전체 신청기업 중 방산매출액 비율이 높은 기업 * 방산매출액 비율에 따른 순위 배정 후, 구간별 가점 부여
영업이익(또는 순이익)	○ 전체 신청기업 중에서 영업이익(또는 순이익)이 낮은 기업 * 영업이익(또는 순이익)에 따른 순위 배정 후, 구간별 가점 부여

※ 계속지원 기업의 경우 최대 5회(5년) 지원가능하며, 6회(6년)이상의 경우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됩니다.

### ③ 선정사실 통보 후 협약체결 및 선금 지급

•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선정결과 통보(협약서 발송)

\* 참여기업은 협약서 2부에 직인날인 후 1개월 이내에 청으로 제출

- ④ **(중간점검)** 지급된 지원금이 **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**하고 잔금 지급
- 참여기업은 지원금 사용에 대한 증빙자료(임차계약서, 매입처별세금계산서, 월별 입출금거래 내역, 이체확인서)를 청에 제출
  - \* 할인액 발생 등의 임차료 미사용분 발생 시 선금 일부 차감하여 지급
- ⑤ **(최종점검)** 지급된 지원금이 **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**
- 참여기업은 지원금 사용에 대한 증빙자료(임차계약서, 매입처별세금계산서, 월별 입출금거래 내역, 이체확인서)를 청에 제출
  - \* 할인액 발생 등의 상황에 따라 임차료 미사용분 발생 시 환수처리
- ⑥ **최종점검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사업종결**
- 참여기업은 사업종결 후 지원사업 실적보고를 위해 임차료 지급 내역(지원금 사용내역)에 대해 명시된 정산보고서 작성 후 청에 제출

## 참고사항

- 위 보조금 지원사업은 공공재정환수법을 적용합니다.
  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청구, 과다청구 및 목적외사용 시 부정이익 가액의 2~5배 제재부가금을 부과·징수합니다.
  - 착오에 의한 과오지급 시에도 보조금 환수뿐만 아니라 이자를 추가하여 환수 하니 유의바랍니다.
- **관련법규**
  - 방위산업기술보호법, 시행령, 시행규칙
  - 보조금에 관한 법률, 시행령, 시행규칙
  - (방위사업청 훈령)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 운영규정
  - \* 법규 전문은 ‘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(<https://www.law.go.kr>)’ 에서 열람 가능
- **관련 양식 다운로드**

(방사청 홈페이지 → 업무·정책 → 업무자료실 → 업무게시판)  
 검색 ‘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·운영 지원사업 서류 양식’

  - 현장컨설팅 제출서류 (제안요청서 등)
  - 공급기업 선택 시 제출서류 (제안서 등)
  - 선금 및 잔금지급 관련 서류
  - 시스템 구축 착수보고서 및 진도보고서, 최종보고서 양식
  - 최종심의 양식